

장애와 국적, 이중의 차별을 넘어





미르를 처음 만난 건 2016년 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어머니, 여동생과 이주한 아홉 살 미르는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걷기는커녕 일어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고국에서 미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어머니는 한국에 오자마자 학교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르는 한 장애인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르를 만났을 때, 미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까지는 1.5km가 넘는 오르막길. 고문 후유증으로 어깨 수술을 받은 아버지, 유산기가 있는 임신한 어머니가 미르를 업고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들고 찾아간 구청에서는 미르의 체류자격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익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미르의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가 있던 2017년 겨울,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 인정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2018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어 난민 인정자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활동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 미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꾸준히 재활치료도 받아 지금은 혼자서도 곧잘 걸어 다닙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자가 아닌 수많은 장애 이주민들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장애인 등록도 할 수 없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봄부터 만난 스무 명의 장애 이주민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우는 아홉 살.
눈이 마주치면 아기처럼
배시시 웃어 보이곤 합니다.



영우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기일 때 머리를 다쳐
안게 된 뇌병변 장애.



몸은 자랐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겨우 목을 가누는 정도의 중증이지요.

영우의 세상은 작은 방과
할머니의 손길, TV소리입니다.



아버지는 떠났고,
엄마는 암과
우울증을 얻었어요.

활동지원, 장애아동 수당,
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보조기 지원...
장애인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들어줬지만

영우는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재활치료는 너무 중요해요.
방안에 누워서만 지내면 안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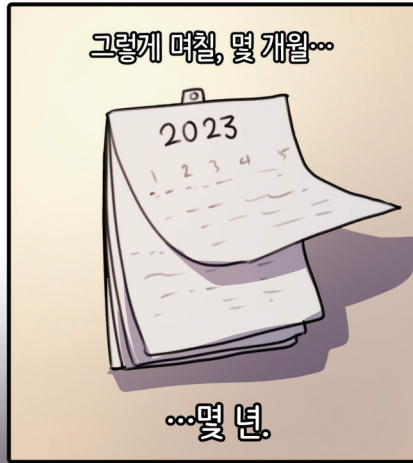


알지, 알고 있긴 한데...

할머니마저 뇌졸중 이후
나날이 쇠약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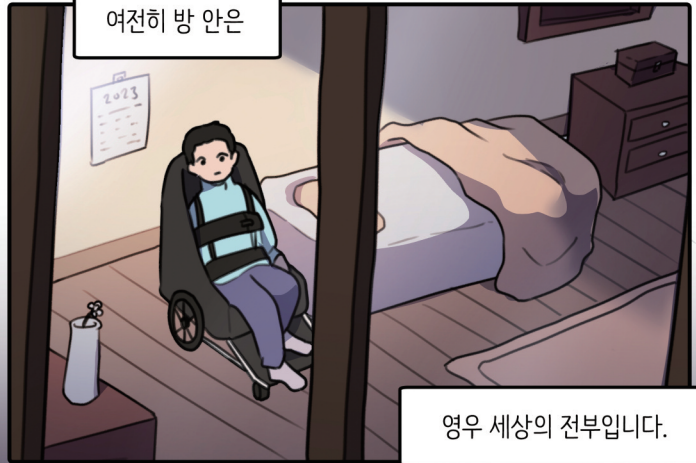


기저귀 갈고 밥 먹이는
것만도 벅합니다.



그렇게 며칠, 몇 개월...

...몇 년.



여전히 방 안은

영우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영우의 세상을

더 넓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장애인 복지법의 이주민 차별조항 폐지, 영우의 세상을 넓혀주는 방법입니다.

이주민이면서 장애인인 사람들

한국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와 같은 신체장애 뿐 아니라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이주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장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과 제도 때문에 장애 이주민 대다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계 지원은 물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필수적인 재활치료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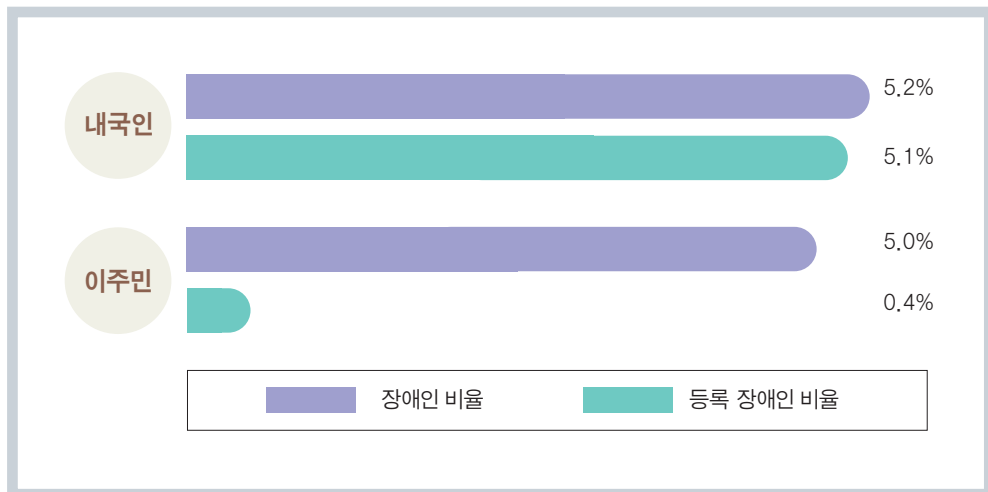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한국으로 이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되며, 만약 한국에서 장애를 갖게 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많은 이주민들이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가 있는 이주민들은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은 채,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도 이주민 인권의 측면에서도 외면받아왔습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과 함께는 2023년 봄부터 가을까지 전국을 다니며 장애 이주민 당사자, 장애 이주민의 가족, 그리고 장애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의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부산, 경남에서 스무 명의 장애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적과 성별, 연령이 서로 달랐고 장애 유형도 다양했지만, 장애와 국적이라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이주민이라서 더 힘들다고 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장애 이주민,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2020년에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이한숙 외, 2020)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 활동이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의 비율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에서 조

사된 내국인의 활동 제한율 5.2%와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장애를 가진 채 한국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내국인 중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5.1%이지만 장기 합법 체류 이주민 중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은 0.4%에 불과합니다.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내국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반면, 장애 이주민은 아주 적은 숫자만 장애인 등록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없거나 해도 소용없는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한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주민을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난민 인정자(F-2-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 중에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진단과 검사를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니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법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제32조의2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 등록을 한다고 생계비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돌봐줄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고 검사도 다시 받을 거 생각하면 돈 들고 힘들기만 할 것 같아요.”

- 뇌병변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키우는 중국 동포 여성

체류자격별 이주민 등록 장애인 (2022년 8월 기준)

| 체류 자격 | 재외동포 (F-4) | 영주 (F-5) | 결혼이민 (F-6) | 난민인정자 (F-2-4) | 합계 |
|--------|------------|----------|------------|---------------|--------|
| 등록 장애인 | 3,292명 | 1,287명 | 731명 | 50명 | 5,360명 |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의 장애 이주민 적용 여부

| 구분 | 주요사업 | 적용 대상 장애 이주민 |
|-------|----------------------|--------------------------|
| 연금·수당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난민 인정자 |
|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보육·교육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난민 인정자 |
|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 없음 |
| 의료·재활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
| | 발달재활서비스 | 없음 |
|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난민 인정자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없음 |

지원 없이는 받기 어려운 재활치료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들 중에는 유난히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20명의 장애 이주민 가운데 17명이 아동이었고, 그 중 4명은 지체장애, 13명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에게 어린 시절의 재활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켜 이후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 이주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들도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 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이주아동들에게는 필요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굳센카드, 부산시교육청의 마중물카드처럼 카드 형태로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장애 이주아동들은 일주일에 한 번, 지정된 재활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더 자주, 더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치료비 지원은 장애 이주민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의 치료비 지원 제도

| | |
|-------------|--|
| 지원대상 | 각 시도 교육청 내 의무교육과정(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 |
| 치료영역 | - 물리치료, 작업치료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치료 |
| 지원금액 | 월 12만원, 1일 3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비 지원 |
| 신청방법 | 학부모가 학교로 치료지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지원 여부 및 치료영역 결정 → 교육청으로 치료지원 신청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
| 이용장소 | 전자카드 가맹점인 재활치료 센터 |

“제일 큰 어려움이 필요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같은 게 우리 형편에는 너무 비싸요. 다행히 장애인학교에 다니니까 언어치료 하나는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심리치료도 예전에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받게 해주고 싶은데 한 시간에 5~6만 원이에요. 매달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타는 것도 몇십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는 못 하고 있어요.”

- 자폐성 장애가 있는 11세 자녀를 키우는 몽골 국적 여성

“센터에 다니면서 재활치료 받고 하면 조금은 좋아지겠죠. 지금처럼 혼자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센터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도 없고, 차도 없고, 나도 힘이 없어요. 안 그래도 자꾸 탈골되는 아이를 혼자 어떻게 안고 업고 센터에 다니겠어요. 장애인 등록을 해도 활동지원 서비스 못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 뇌병변 장애가 있는 9세 손주를 키우는 중국 동포 여성



장애 이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강보험료

2019년 7월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 이주민들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국인 지역가입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반면, 이주민 지역가입 세대주는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 이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주민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내국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소득·재산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에게는 그렇게 책정된 보험료와 전년도 평균보험료 중 높은 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또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되지만, 이주민 지역가입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가 아닌 이상 장애인 등록을 했더라도 경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평균 보험료가 올라감에 따라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장애 이주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범위

| 구분 | 고용허가제 |
|-------------|--|
| 내국인 세대 |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외국인 세대 | 세대주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
| 내-외국인 혼합 세대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해당), 세대구성원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연 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보험료 | 113,050원 | 123,080원 | 131,790원 | 140,070원 | 143,840원 |

*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에게는 별도의 부과 기준 적용

“이 분이 노숙을 하다가 발견되어서 저희 쉼터에 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건강보험료 체납액만 400만 원이 넘게 쌓여 있더라고요. 2019년에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부터 그때까지 한 3년 치가 체납되어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화교들은 이미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나오는데, 이분은 거주(F-2) 체류자격이라서 무조건 평균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고 부모도 다 돌아가셨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이런 걸 챙겨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저희 쉼터에서 부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5만 원 버시거든요. 그걸로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하고, 또 매달 14만 원씩을 추가로 내고 있어요. 화교는 간이귀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재정 능력은 보거든요. 소득도 너무 적고 그나마 다 보험료로 나가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귀화가 되면 장애인 등록도 되고 아마 수급권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죠.”

- 지적장애가 있는 50세 화교를 보호하고 있는 쉼터 담당자

“저는 스무 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원래 고향에서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2019년에 오빠들이 있는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아직 한국어도 잘 못 하고, 보시다시피 휠체어에 앉아있으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죠. 오빠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또 따로 내야 하잖아요. 매달 14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나오는데 보험료까지 받고 있으니 많이 미안해요. 장애인 등록도 알아봤는데, 진단 검사비만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도와달라고는 말하지 못해서 장애인 등록도 못하고 있어요.”



- 지체장애가 있는 47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동포 여성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된 장애 이주민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의 형편은 대체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부모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사례도 6건이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필요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관식이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든 가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김성희 외, 2020)에 따르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같은 시점 전체 인구 수급률 3.6%에 비해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높은 빈곤율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장애 이주민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결혼이민자와 난민 인정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수당도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장애 이주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이주민

- 1)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경우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2) **난민**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장애아를 키우는 집들 대부분이 싱글맘 가정이에요. 왜 한국 사람들도 아이한테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은 다 떠나고, 양육비 같은 거 도와주는 것도 하나 없어요.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재활치료는 고사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어서 찢절매는 상황이에요. 한번은 다른 기관에서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치료센터까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택시를 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한두 번 가고 가지 못했어요. 교통비 지원은 또 안 되니까.”

-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난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

“와이프는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저 혼자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아이한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직도 그때 진 빚을 갚고 있어요. 지금 아이 목에 호흡을 위해서 관을 꽂고 있고, 배에도 음식 넣는 관을 꽂고 있거든요. 이걸 병원에 가서 하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직접 사서 와이프가 소독하고 교체하고 해요. 병원에서는 아이가 못 걸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혼자 서고 걸으려고 해요. 보조기구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남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보조기구를 만들어줬어요.”

- 뇌병변 장애가 있는 6세 자녀를 키우는 베트남 국적 남성



사라지는 아이들, 찾아다니는 부모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이주민 부모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인에게 팔찌 형태의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하고,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이주민에게는 이마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꾸 혼자 사라지고, 집에 있다가도 나가고 그런 게 힘들어요. 한번은 아빠랑 수원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을 갈아타는 사이에 갑자기 혼자 뛰어가서 다시 전철을 타버린 거예요. 지하철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경찰도 부르고 해서 겨우 찾았어요. 얼마 전에는 집에서 나갔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아빠는 막내를 돌보는 사이에 슬그머니 나간 거예요. 동네를 다 뒤져도 없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세종시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차도를 걷고 있는 걸 어떤 아저씨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대요. 세종시 경찰서에서 여기 천안 경찰서에 연계해줘서, 그렇게 찾았어요. 경찰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한테 팔찌 만들어주는 거 있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가서 물어봤더니 외국인은 안 된대요. 요즘에는 아빠가 둘째만 보고 있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같이 나가서 돌아다녀요. 몇 시간씩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요.”

- 발달장애가 있는 11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몽골 국적 여성

“아이가 한번 어디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거기에 꼭 가야 해요. 밖에 다닐 때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놀이터에 가고 싶거나 편의점에 가고 싶으면 제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혼자 내려서 뛰어가고요. 같이 밖에 나가면 붙잡으러 쫓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요즘에는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뛰어나가요. 그래서 낮에는 계속 옆에 있으려고 하고, 밤에는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자요. 제가 자고 있는데 나가면 큰일나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옆에 붙어 있고 나가면 따라 나가고 하는데 학교에서가 문제예요. 한번은 학교 선생님한테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교 근처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몇 시간 만에 동네 공원에서 겨우 찾았어요. 장애인 등록이 되면 스마트 워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애는 장애인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모금해서 스마트 워치를 사줬어요. 지금은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 다시 데리러 갈 때까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 발달장애가 있는 14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필리핀 국적 여성

장애 이주민이 부딪히는 또 다른 장애, 언어

한국 국적이 없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진단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 이주아동들은 부모가 의뢰를 하더라도 진단평가 대상자가 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한국어를 못 하는 것일 뿐이라고 치부할 때가 그렇습니다.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렵게 진단평가의 기회를 갖게 되더라도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수십, 수백 개의 문항을 부모가 작성해야 할 때입니다.



“2학년 때부터 동네에 있는 공부방에 보냈어요. 학교 끝나고 2시간 정도 봐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3개월쯤 뒤에 공부방 선생님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서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도와주는 이주민 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과 공부방 선생님도 특수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은 그냥 아이가 한국어가 느린 거래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를 못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초등학생이 4~5세 수준의 행동을 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특수학급이 아니라 한국어 학급으로 보내겠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특수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도와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 지적장애가 있는 10세 아동을 키우는 라이베리아 국적 여성

“발달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받으려면 작성해야 할 검사지가 서너가지는 돼요. 총 문항이 500개도 넘어요. 그런데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답하는 게 있고, 또 부모가 답해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한국어를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검사지는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이런 검사만 있는 건 아닐 거 같아요. 찾아보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하는 수 없이 제가 일일이 번역을 해야 했어요.”

-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난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



장애 이주민이 부딪히는 또 다른 장애, 체류자격

이주민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장애 이주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다가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로 인해 더 이상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 기존의 체류자격을 잃고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치료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기타(G-1)라고 하는 임시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치료가 종결되면 해당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주아동의 경우는 성인이 되면서 체류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포나 영주권자의 자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은 성인인 부모에 수반되는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데, 해당 체류자격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학에 진학해 유학(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이 쉽지 않은 장애 이주아동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설령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취업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아동의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교수(E-1) 체류자격을 갖고 있었고, 아이들은 동반(F-3)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폐가 있는 둘째를 위해서 장애인 등록을 알아봤더니 영주(F-5) 체류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들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신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출입국에서 일단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3년 뒤에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가족들 모두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준 거주(F-2) 체류자격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대요. 첫째야 알아서 대학에 가겠지만 둘째가 걱정인 거죠.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둘째가 18살이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영주권을 못 받으면 아이는 체류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등록보다 이제는 그게 더 걱정이 돼요.”

- 자폐성 장애가 있는 15세 자녀를 키우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장애 이주민, 차별 없는 삶을 꿈꾸며

2007년, 대만 국적의 화교 이주민들이 ‘국가가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 이주민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듬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나서야 장애인복지법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외국 국적 이주민 가운데 재외동포, 결혼이민, 영주 체류자격 소지자들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자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는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이주민의 장애인 등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항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니,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나라들은 있었지만, 일단 그러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생계, 의료, 교육 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건 없건, 국적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고,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돌봄과 치료를 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난 장애 이주민과 가족들의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주민들도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떼야 합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는 연구하는 활동가, 활동하는 연구자와 함께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배우며 행동하는 대안 연구소입니다. 이주민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미등록 이주민, 장애 이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그 대안이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이주민과 함께는 인간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차별받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며 상담, 의료 및 복지지원, 다문화 인권교육, 이주인권 정책 개발, 나아가 아시아 지역 인권과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인권, 참여를 통한 성장,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연대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사회를 지향합니다.



www.mihu.re.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5층
TEL_ 051-851-6801 FAX_ 050-4235-6801
E-MAIL_ mihurights@daum.net



www.somi.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6번길 7, 4~5층
TEL_ 051-802-3438~9 FAX_ 051-803-9630
E-MAIL_ somi3438@daum.net

제작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과 함께

만화
안준현

삽화
문수정

후원
다음세대재단
